

제22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6.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98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5. 29.(금)
- 라. 회부일자 : 2019. 5. 29.(금)

### 2. 제안이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대상시설 :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 1, 2, 3호점

현황은 2쪽 표1과 같음

**표1 우리동네 키움센터 현황**

명 칭	설치 장소	시설규모	정원	개소시기 (예정)	비 고
금 천 1호점	벚꽃로 30, 206동 314호(독산1동)	114.84㎡ (약 34평)	20명	20년 9월	금나래초 인근
금 천 2호점	금하로 816, 벽산아파트 515동 105호(시흥2동)	110.09㎡ (약 33평)	20명	20년 10월	금동초 인근
금 천 3호점	시흥대로 39길 46, 상가 3층(시흥1동)	79.56㎡ (약 27평)	20명	20년 10월	문백초 인근

나. 위탁개요

-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2) 위탁내용 :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 2, 3호점 관리·운영
  - 가) 지역 초등학생 돌봄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나) 지역연계형 돌봄 사업 추진 및 초등학생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 수행
  - 다) 수요자(초등학생) 모집 및 이용 아동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키움센터 시설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위탁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및 민원에 관한 사항 관리 등
- 3) 위탁방법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후 센터별 심사 선정
- 4) 운 영 비 : 연 447백만원(국·시비 420백만원, 구비 27백만원)
  - 개소 당 연 소요예산 : 149백만원

- 국·시비 : 140백만원(인건비:131백만원 / 매칭운영비:9백만원)
- 구 비 : 9백만원(매칭운영비 9백만원)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나. 기타사항

- 금천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운영계획【교육지원과-4420, `20. 4. 6】

#### 5. 검토의견

##### 가. 제안이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2020. 5. 29.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

나.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탄력적 대응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  
: 시설의 운영 내용은 아래 표2 참조

## 표2 운영 내용

- ① 아이의 일상패턴(학원수업 등)에 따라 탄력적 센터 입·출입 가능
- ② 상시돌봄 최대 월 5만원 이용료 (일시돌봄 1일 2,500원 이내)  
→ 프로그램 활동비, 체험비, 상해보험 등 제반비용  
※ 급식 제공 시 별도 수익자부담 추가 가능
- ③ 일시적, 긴급 돌봄 (정원 외 20%까지)
- ④ 놀이 및 융합프로그램, PBL 기반 프로그램 제공 등

## 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2호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호 제1항에서는 (다함“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령에 관련 근거가 있고,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 1.2.3호점」의 운영을 초등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자치구는 붙임 1 표와 같이 13개 자치구에서 20개소를 운영 중에 있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또한 서울시 금천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사무로써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됨.

- 붙임 1.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 1부.  
2. 관련 법령 1부.

# 붙임 1

#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

(2019.12.31. 기준)

연번	행정동	자치구	개소일	면적	이용가능 아동 수 (기준정원)	이용아동 수		위탁업체
						상시	일시	
		13개구	20개소					
1	자양3동	광진	19.09.02.	75㎡	20	3	1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	용신동	동대문	19.07.01.	185㎡	30	27	0	(사)이웃을돕는 사람들
3	장안동		19.07.31.	186㎡	20	6	0	(사)모래놀이 상담협회
4	방학동	도봉	18.06.01.	63㎡	20	24	0	도봉문화재단
5	월계동	노원	18.09.03.	66㎡	20	22	0	한국장로교복지재단
6	북가좌제2동	서대문	19.06.03.	85㎡	20	20	0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7	성산2동	마포	18.06.01.	102㎡	20	19	6	마포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8	망월1동		19.08.20.	90㎡	25	13	10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9	신정3동	양천	19.09.23.	141㎡	25	34	0	양천나눔교육 사회적협동조합
10	개봉3동	구로	19.10.01.	80㎡	20	19	0	(사)함께하는 한숲
11	구로5동		19.11.01.	72㎡	20	5	0	(사)따뜻한마음
12	노량진2동	동작	19.06.10.	196㎡	30	6	4	(사)결혼이민 가족지원연대
13	우면동	서초	19.05.16.	102㎡	20	25	0	홍법문화복지법인
14	수서·세곡 ·일원본동	강남	19.04.01.	316㎡	45	31	0	태화복지관
15	역삼2동		19.11.25.	94㎡	20	19	0	(사)홀리비전
16	잠실본동	송파	19.11.18.	66㎡	20	3	0	(사)인터넷꿈희망터
17	송파1동		19.12.02.	73㎡	20	20	1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8	삼전동		19.12.01.	86㎡	20	20	0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19	가락1동		19.12.02.	76㎡	20	16	0	(사)함께웃는마을 공동체 즐거운가
20	암사동	강동	19.10.14.	86㎡	20	19	0	생각실험 사회적협동조합

## 아동복지법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 1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69호, 2016. 7. 1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기획예산과), 02-2627-1074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6. 7. 18.>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6. 7. 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8.>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09. 12. 24.> <개정 2016. 7. 18.>

④ 삭제 <2016. 7. 18.>〔제목개정 2016. 7. 18.〕

**제4조의2(민간위탁사무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도서관·체육·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문화·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활·근로자복지·취업·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6. 교통·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본조신설 2016. 7. 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47호, 2019. 7. 19., 제정]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초등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초등 돌봄 인력 및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이동 및 안전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